

	소단위 전공과정 운영 규정	규정번호		KTC-05-29	
		제정일자		2025. ?. ??.	
		개정일자			
		개정번호	Ver.1.00	총페이지	4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한국관광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 학칙 제33조의2(전공의 이수)에 따라 소단위 전공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소단위 전공과정이란 사회 및 관련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역량, 직무, 자격 등을 위한 최소 단위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말하며, 학문간 융·복합 사고능력 함양 및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실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

②소단위 전공과정은 마이크로디그리, 나노디그리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3조(개설 및 운영) ①소단위 전공과정은 각 학과(전공) 및 부서에서 주관하여 개설 및 운영할 수 있고, 그 교과목은 학과(전공) 교육과정개발 시 편성한다.

②소단위전공과정 과정 개설·변경·폐지 등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.

③소단위 전공과정은 학과(전공)의 교육과정에 다음 각 호의 학점으로 개설할 수 있다.

1. 마이크로디그리: 9학점 이상
2. 나노디그리: 5학점 이상

제4조(이수학점) ①소단위 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년도 소단위 전공과정 교육과정표에 명시한 과정 중에서 희망하는 과정에 개설된 교과를 한학기 동안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공유대학·컨소시엄, 국고사업 등은 별도 운영지침에 따른다.

1. 마이크로디그리: 9학점 이상
2. 나노디그리: 5학점 이상

②소단위 전공과정 신청 전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,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③소단위 전공과정으로 인정된 교과목은 동일한 교과목에 한해서 전공 및 교양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단, 제33조의2(전공의 이수) 전 호의 전공이수에 중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이수 인정) ①소단위 전공과정의 이수요건 충족 시 수료증서 과정에 따라 [별표1] 또는 [별표2]를 발급하고, 취득사항을 성적증명서에 기재한다.

제6조(세부사항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제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5년 ?월 ??일부터 시행한다.

제 호

수료증서

성명 :

생년월일 :

위 사람은 한국관광대학교 학칙 제33조 2에 의하여 분야에 특화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그 역량을 갖추었기에, 이를 인정하여 마이크로디그리 수료증을 수여함.

년 월 일

한국관광대학교 총장 ○ ○ ○ (인)

제 호

수료증서

성 명 :

생년월일 :

위 사람은 한국관광대학교 학칙 제33조 2에 의
하여 분야에 특화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
그 역량을 갖추었기에, 이를 인정하여 나노디그리
수료증을 수여함.

년 월 일

한국관광대학교 총장 ○ ○ ○ (인)